

##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 추진

- 업무유형 확대(8종→10종), 맞춤형 업무지원, 압류방지계좌 도입 등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복지사업\*의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오픈마켓 플랫폼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.

\* (지자체 복지사업)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

'오픈마켓 플랫폼'은 지자체 복지사업의 신청, 소득재산 조사, 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, 2010년 최초 개통 이후 현재까지 325개\*의 지자체 복지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.

\* 오픈마켓 플랫폼 지원사업 수(누적) : (2019) 186개 → (2021) 255개 → (2023.11월) 325개

\*\* 지자체 복지사업 특성에 따라, 8가지 업무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(「붙임1」)

이번 '오픈마켓 플랫폼' 확대 운영의 주요 내용은 ①업무 유형 확대(8→10종),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②맞춤형 업무지원 기능 및 ③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이다.

### ① 표준 업무 유형 확대(8→10종)

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,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업무 유형 2종을 추가 구축하여 명절 위문금, 난방비 지원금 등 수기로 처리하던 일회성 사업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.

### ②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업무 지원

지역·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 항목이나 대상자 지원 기준\* 등 사업 세부 항목을 유연하게 추가·변경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,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.

\* (지원기준 예시) 성별, 나이, 거주기간, 거주지, 가구원 수 및 동거 자녀 유무 등

### ③ 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

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복지사업에도 압류방지계좌 입금 기능을 신설한다. 이를 통해 주민센터로 방문 수령하던 지원금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압류방지계좌로 직접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.

\* 단, 압류방지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

#### <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후 달라지는 점 >

구분	현행	개선
공무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명절위문금, 난방비 지원 등 일회성 사업 수기 처리</li> <li>▶ 획일화된 사업 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일회성 사업도 시스템을 통한 지급 처리로 신속.정확한 집행</li> <li>▶ 지역.사업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사업 운영 가능</li> </ul>
수급자	▶ 지원금 주민센터 방문 수령	▶ 압류방지계좌로 신속 수령

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“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을 통해 지자체는 더욱 유연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기획·관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압류방지계좌 도입 등을 통해 빠르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” 라고 언급하며,

“보건복지부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자체 복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, 오픈마켓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오픈마켓 플랫폼 개요  
2.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운영 적용사례(예시)

담당 부서	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운영과	책임자	과장	홍화영 (044-202-31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용준 (044-202-3163)
			주무관	나선희 (044-202-3167)



- (개요) 지자체 복지사업\* 운영을 위해 행복이음에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오픈마켓 플랫폼<sup>(7)</sup>(지자체 업무지원) 구축·운영 중('10년~)
  - \*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(예: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)
- 신청, 소득재산 조사, 급여 지급 등 주요 업무절차를 8개 유형으로 표준화(표준업무절차)하고, 사업 특성에 맞춰 필요한 기능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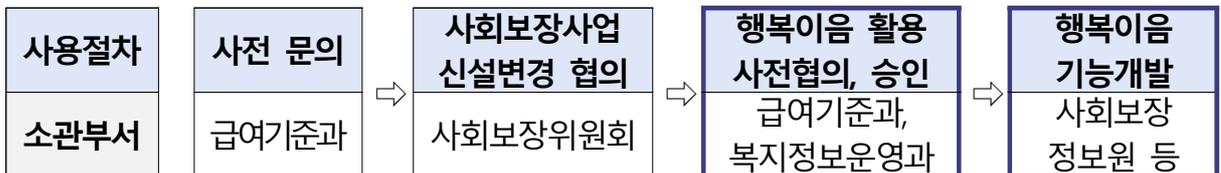
**< 오픈마켓 플랫폼 표준업무절차 >**

업무유형	표준업무 프로세스 적용 단계										
유형1	신청	→	조사	→	결정	→	급여	→	현금	→	정기
유형2	신청	→	조사	→	결정	→	급여	→	현금	→	비정기
유형3	신청	→		→	결정	→	급여	→	현금	→	정기
유형4	신청	→		→	결정	→	급여	→	현금	→	비정기
유형5	신청	→	조사	→	결정	→		→	현물		
유형6	신청	→	조사	→	결정	→		→	자금대여		
유형7	신청	→		→	결정	→		→	현물		
유형8	신청	→		→	결정	→		→	자금대여		
유형9					결정	→	급여	→	현금		
유형10					결정	→	급여	→	현물		

\* (업무유형 9/10) '24년 1월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

- (사용절차) ①사회보장위원회 제도 신설·변경 협의 → ②행복이음 활용 사전협의 요청 → ③활용승인 시, 행복이음에 반영

\* 「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」 > (부록)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·이용 협의



- (사용현황) 지자체 특화사업 신규 확대에 따라 시스템 사용 수요가 지속 증가\*하고 있으며, 현재 325개 사업 지원 중('23.11월 기준)

\* (오픈마켓 플랫폼 지원사업 수) 186개('19) → 255개('21) → 325개('23.11월)

- (대상사업) 경남 창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 위문금
  - (사업개요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마다 최대 3만 원 지급(연2회)
  - (관련근거) 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4항(급여의 기준 등)

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- (대상규모) 약 2만 가구('22년 기준)

○ 시스템 적용예시

- (표준업무유형) 유형9(결정-급여-현금)
- (주요 변경사항) ^지원대상자 조건 검색, ^지원대상자 확인 및 결정, ^복지급여 계좌(압류방지계좌 포함)로 자동 입금기능 도입

- ▶ (현행) 평균 400개 지원대상 가구 목록 출력 및 조건 확인(읍면동) → 지원가구 결정 및 명단 수기 관리, 급여계좌로 수기 지급(시군구)
- ▶ (변경) 지원조건에 따라 시스템에서 대상자 일괄 조회(읍면동) → 지원가구 결정 및 시스템에서 명단 관리, e호조\*를 통한 급여 지급(시군구)
- \* 지자체 예산편성, 지출, 결산 등을 지원하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

< 신규 표준업무유형 적용에 따른 주요 업무처리 절차 변경사항 비교 >

업무처리	현행	변경
①대상자 조회	행복이음에서 복지대상자 명부 출력 및 조건 개별확인	오픈마켓 플랫폼에서 복지대상자 명단 조건 검색
②대상자 관리	대상자 정보(이름, 계좌번호 등) 명부 수기 작성 및 관리	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및 결정
③급여 지급	복지급여 계좌로 지원금 수기 지급 ※ 단, 압류방지계좌는 별도 시스템 없이 지자체 수기 입금 불가, 지원대상자가 직접 방문 및 지원금(물품) 수령必	복지급여 계좌로 시스템 자동 입금(e호조 연계) ※ 일부 사업은 압류지계좌로 입금가능 ⇒ 지원대상자 직접 방문 불요